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민병덕 · 김 윤
이주희 · 박지혜 · 박정현
임미애 · 백승아 · 박민규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. 또 현행법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.

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(안 제16조제1항),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,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).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“(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)”을“(물소비효율 등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”을 “물소비효율 등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<u>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</u>)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<u>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</u> 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6조(<u>물소비효율등급 등</u>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물소비효율 등</u> <u>급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</u> 하여야 한다.